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년월일 : 1999. 4. 24

제 출 자 : 사 하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근거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98. 7. 1)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 구민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에 자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 또한 시설이용료가 장기간 미조정됨으로 인해 현실성을 잃은 이용료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사회여건 변화에 신속성있게 대처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규정 정비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조로 개정함 (안 제1조)
- 나. 다대동 96 - 1번지에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다대동 1548 - 12번지에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함 (안 제2조)
- 다. 구민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복지관의 이용허가(제3조), 이용제한(제4조), 수탁자의 의무(제7조) 등 규제조항을 삭제함
- 라. 장기간 미조정된 시설이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 (안 제5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35조 (조례)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44조(비용의 징수)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1번지에 둔다.
4.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2번지에 둔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복지관 시설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1. 어린이집	1인 1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내	
2. 독 서 실	1인 1회 1인 1월	500원 이하 10,000원 이하	
3. 취미교실	1인 1월 (과목당)	35,000원 이하	
4. 기능교실 (학습지도)	1인 1월 (과목당)	30,000원 이하	
5. 기능교육 (직업훈련)	1인 1월	50,000원 이하	
6. 강당대여	1회 (2시간)	50,000원 이하 단, 1시간초과시 마다 10% 가산	토·일·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7. 목 욕 탕	1회	목욕탕협회 협정가격의 80% 범위내	대인 7세이상 소인 7세미만
8. 예 식 장	1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내	
9. 미 용 실	1회	커트 5,000원 이하 파마 15,000원 이하	
10. 기타시설		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구체적 내용 별도 승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u>사회복지법 제28조에</u>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3조(이용허가) ①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므로써 허가에 갈음한다.</p> <p>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p> <p>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전염성 질환자</p> <p>2. 정신질환자</p>	<p>제1조(목적)</p> <p>..... 사회복지법 제34조에</p> <p>.....</p> <p>제2조(명칭과 위치)</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96-1번지에 둔다.</u></p> <p>4. <u>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2번지에 둔다.</u></p> <p>(삭제)</p> <p>(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p> <p>4. 이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자</p> <p>5.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p> <p>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3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p> <p>.....</p> <p>.....</p> <p>②복지관의 시설이용료는 별표1의 범위내에서 수탁법인이 정한다.</p> <p>③</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p>제6조 (생략)</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전액 사용한다.</p> <p>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사하구 또는 사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삭제)</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p> <p>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제9조 (생략)</p> <p>제10조 (생략)</p> <p>제11조 (생략)</p>	<p>제5조 (위탁의 취소)</p> <p>.....</p> <p>.....</p> <p>(삭제)</p> <p>1</p> <p>.....</p> <p>2</p> <p>3</p> <p>.....</p> <p>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복지관 시설 이용료				(별표1) 복지관 시설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1. 탁아소	1인 1회 (종일반)	50,000원이하	중식·간식 계 공	1. 어린이집	1인1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내	
2. 독서실	1인 1회 1인 1월	500원이하 10,000원이하		2. 독서실	1인1회 1인1월	500원 이하 10,000원 이하	
3. 취미교실 운영	1인 1월 (과목당)	13,000원이하		3. 취미교실	1인1월 (과목당)	35,000원 이하	
4. 기능교실 (학습지도)	1인 1월 (과목당)	15,000원이하		4. 기능교실 (학습지도)	1인1월 (과목당)	30,000원 이하	
5. 기능교육 (직업훈련)	1인 1월	25,000원이하		5. 기능교육 (직업훈련)	1인1월	50,000원 이하	
6. 강당대여	1회 (2시간)	20,000원이하		6. 강당대여	1회 (2시간)	50,000원 이하 단, 1시간 초과시 마다 10% 가산	토·일·공휴일 및야간 20% 가산
(신설)				7. 목욕탕	1회	목욕탕협회 협정 가격의80%범위내	대인7세이상 소인7세미만
(신설)				8. 예식장	1회	가정의례예관법을 이 정한 범위내	
(신설)				9. 미용실	1회	컷트 5,000원이하 파마 15,000원이하	
7. 기타시설			보조사업계획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을 받아 결정	10. 기타시설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구체적내용 별도 승인	